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 회 의 명 : 제9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 회의일시 : 2014. 3. 7(금) 10:30

-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 참석위원 : 이경재 위 원 장
김충식 부위원장
홍성규 상임위원
양문석 상임위원 (4인)

- 불참위원 : 김대희 상임위원 (1인)

제9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10시 30분 개회 】

1. 성원보고

○ 이경재 위원장

- 최현숙 의안정책관리팀장, 성원보고해 주십시오.

○ 최현숙 의안정책관리팀장

- 재적위원 과반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김대희 위원님은 개인 사정으로 오늘 불참하셨습니다. 오늘 방청은 총 12명이 신청하였습니다.

2. 국민의례

○ 최현숙 의안정책관리팀장

-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3. 개회선언

○ 이경재 위원장

- 2014년 제9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중에 한 분이 못 오셨는데 오늘, 의결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4. 지난 회의록 확인

○ 이경재 위원장

- 제8차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을 확인하고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회의록과 속기록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의하신 대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이경제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보고사항> 1건이 공개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건을 공개로 심의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6. 보고사항

가.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대한 사항

○ 이경제 위원장

- <보고사항 가>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김영관 방송기반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관 방송기반국장

-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사유입니다.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이하 ‘편성고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기 위함입니다. 추진배경은 국내제작물의 경쟁력이 이미 확보되어 있고, 개방화 시대에 드라마, K-pop 등 방송한류의 지속적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규제 완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또한 편성비율 적용의 유연화 및 명확화를 통해 방송 신기술의 원활한 도입을 지원 및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등 규정의 미비점 보완도 하고자 합니다. 추진 경과는 작년 6월~12월까지 국내제작 편성규제제도 개선방안 연구라는 제목으로 연구용역을 실시하였고, 올해 2월 지상파·종편PP, 지상파DMB,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및 지역방송사업자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성비율 규제 완화 부분입니다. 첫 번째, 국내제작물 편성비율 완화입니다. 방송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에는 지상파방송사의 국내제작물 편성비율을 60~80% 범위 내에서 하한선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편성고시에서 종합편성지상파방송사(지상파방송3사 DMB 포함)·전문편성지상파방송사에 대해서는 80% 이상, EBS는 70% 이상을 편성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하지만 시행령에서 정한 최대치인 80% 규제가 과도한 측면이 있고, 그리고 국내제작물의 경쟁력이 이미 확보되어 있으므로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서는 규제 완화가 필요합니다. 특히 종합편성지상파방송사와 동일하게 규제하고 있는 지상파방송3사 DMB와 전문편성지상파방송사의 과도한 부담도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정 내용은 종합편성지상파방송사는 80% 이상에서 70% 이상 편성하도록 완화하고, 지상파방송3사DMB 및 전문편성지상파방송사는 60% 이상 편성토록 시행령의 범위 내에서 완화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국내 대중음악 편성비율 완화입니다. 현행 규정은 방송법 시행령 제57조제2항에서 방송사업자의 국내 대중음악 편성비율을 50~80% 범위 내에서 하한선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편성고시에서는 국내 대중음악을 60% 이상 편성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하지만 K-pop 등 국내 대중음악의 경쟁력이 높은 수

준이며, 대부분의 방송사들이 100%에 가까운 편성을 하고 있어 규제의 실효성이 낮기 때문에 편성비율의 하향 조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규제 폐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행령 범위 내에서 법령상 최소 수준인 50% 이상 편성하도록 완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편성규제 적용 유연화 및 명확화와 관련된 개정 내용입니다. 먼저 외국 수입물 1개 국가 편성비율을 적용하는 것에 대한 예외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방송법 시행령 제57조제5항에는 1개 국가의 영화, 애니메이션, 대중음악 수입물 편성비율을 80% 이내에서 상한선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편성고시에는 시행령과 동일하게 80% 이내에서 편성토록 의무화하였습니다. 개정 필요성입니다. 영화·애니메이션 등을 전문으로 하지 않는 방송사의 경우에는 동 규제를 위반하기 쉽기 때문에 외국물 편성을 꺼리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외국의 영화, 애니메이션, 대중음악 프로그램을 2편 또는 120분 이내 편성한 방송사업자에 대하여는 편성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신기술 시험방송 채널에 대해서는 편성규제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특칙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신기술을 이용한 시험방송 시 편성비율을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에 신규 서비스의 원활한 도입을 위한 특칙 규정이 필요합니다. 2012년도에 부칙을 통해서 3D 전문채널에 국내제작 영화 및 1개 국가 수입 영화 편성비율 적용을 유예한바 있습니다만 부칙으로 규정할 경우에는 필요할 때마다 매번 고시를 개정해야 하는 행정적인 부담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에 편성비율 적용 유예가 가능하도록 특칙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을 한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12조(신기술 시험방송 채널에 대한 특례)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 신기술을 적용하여 시험방송하는 채널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이 고시 규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편성비율 적용기간 신설입니다. 신규로 방송을 개시한 방송사업자의 경우 편성비율 적용기간이 불분명하므로 고시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2003년 방송위의 결정으로 신규 방송사업자가 편성기간을 완전히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편성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의결한바 있습니다만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고시로 명확히 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신설 내용은 월간, 반기, 연간의 기준을 정하고, 신규 방송사업자가 편성비율 기간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편성비율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 일정입니다. 오늘 보고 드린 내용을 접수해 주시면 4월 말까지 입법예고, 규제위 심사 등을 마쳐서 5월 초에는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관보 게재를 거쳐 개정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이경재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충식 부위원장

- 간단히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편성내용을 10% 정도씩 완화했는데 이것에 대한 수치상의 근거는 어떻게 마련된 것입니까? 예를 들면 지난번 연구용역에서 제시된 수치들입니까?

○ 박진희 편성평가정책과장

- 지난 '13년도에 6개월 동안 국내제작물 편성비율 규제라든지 각종 현행 방송법령에서 규정

하고 있는 편성에 관한 비율을 개선하는 내용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시행한바 있습니다. 연구용역에서 제안한 내용은 국내제작물에 대한 편성비율 완화라든지 또 1개 국가 편성비율에 대한 개선 등 이런 다양한 건의가 있었고, 구체적으로 편성비율을 퍼센티지로 완화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현행 시행령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최하한선을 정하게 됐는데 그런 부분들은 현재 규제가, 지상파방송사 국내제작물 편성비율의 경우에는 이미 80% 최상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편성지상파방송사의 경우에는 EBS가 70%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에 완화하는 하한선이 60%입니다. 그래서 60%로 완화하는 부분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한선을 60%로 잡고 국내제작 편성비율을 완화하는 안을 제안했습니다.

○ 김충식 부위원장

- 일단 보고하는 안(案)이니까 이대로 접수하되, 60%라는 것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유일한 정답이라는 60%가 아니기 때문에 그 하한선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증하고 해외사례나 학자들의 견해, 또 실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합니다. 그러한 설정이 타당하고 실효성이 있게 움직이도록 정책 목표를 세우고 실행해 나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 김영관 방송기반국장

- 비율 부분에 관해서도 충분한 의견수렴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홍성규 상임위원

- 지금 규제 완화를 마침 해서 다행인데 사실 이런 규정이 한 번도 적용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필요 없는 정도로 선언적인 의미를 가진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아마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 중에 더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때가 늦은 감이 있지만 하여튼 잘 된 것 같고, 또 새로 새로운 것을 찾아내서 더 많은 규제완화가 필요하다, 쓸데없이 하는 규제가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과감하게 규제완화할 수 있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니까 그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보도록 하십시오.

○ 김영관 방송기반국장

- 예, 알겠습니다.

○ 이경재 위원장

- 제가 이 문제를 보면서, 고시 시행령은 국내제작 편성을 60%에서 80% 이내로 하라고 되어 있는데 고시는 80% 이상으로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시행령을 더 벗어나서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 김영관 방송기반국장

- 예.

○ 이경재 위원장

- 그러니까 시행령 범위 안으로 일단 끌어내린다는 측면이 있고, 다른 것들은 거의 다 60%까지 최저선까지 할 수도 있는데 지상파만은 한꺼번에 80% 이내니까 10% 줄이면 70%이고, 10% 줄

이면 최저 60%인데 그 중간선에서 일단 단계적으로 하겠다는 뜻으로 70%가 된 것이 아닌가 봅니다. 수치로 계산하기가 아마 어려운데, 전문편성지상파방송은 60%로 되고, EBS는 70%로 되어 있는 것을 60%로 하고, 수치라는 것이 그렇게 큰 의미는 없는데 그러나 지상파를 한꺼번에 확 푸는 것에 대한 부담도 있으니까 그것은 단계적으로 한다는 뜻이 있는 것 아닙니까?

○ **김영관 방송기반국장**

- 예, 저희들이 그런 뜻으로 80%에서 70%로 낮추고, 70%에서 60%로 내린 것입니다.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이해관계자나 일반인들이 다른 의견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견들은 충분히 반영해서 의견수렴한 후에 다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이경재 위원장**

- 이제부터 의견수렴과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도 거치는데, 하여튼 우리가 하나하나 규제완화하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고, 특별히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금년에 우리의 목표를 창조방송과 세계화라는 것을 화두에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방문했을 때 중국에서 자꾸 규제를 하려고 해서 우리도 앞으로 중국과 FTA를 할 경우에 대비해서 '우리가 열테니까 너희들도 닫지 마라' 이러한 전략적 사고로, 이것도 접근해 갔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7. 기 타

○ **이경재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마쳤습니다. 다른 논의사항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회의 날짜는 별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폐 회

○ **이경재 위원장**

- 이상으로 제9차 방송통신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0시 48분 폐회 】